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49
----------	-------

제출년월일 : 2015. 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대비, 지속가능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마포구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 (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
-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익금
-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라.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구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

마.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

바.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 4. 23. ~ 5. 13.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다.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라. 기획예산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4.22) 결과 : 원안 동의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5. 19)

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사.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익금
3.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4. 서울특별시 및 국가에서 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4.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 세입의 적용례) 제4조에 따른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합정동) 내 기부채납 시설물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제4조(세입) 및 제5조(세출)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광진흥센터 운영 및 기부채납시설 활용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15. 7. ~ 2020. 6.(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사용료(합정)	326,736	332,290	337,938	343,682	349,524	1,690,170
	○ 사용료(상암)			78,928	82,085	85,368	246,381
	○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		4,800	4,800	4,800	4,800	19,200
	소계(a)	326,736	337,090	421,666	430,567	439,692	1,955,751
세출	○ 관리비(합정)	4,200	4,263	4,327	4,392	4,458	21,640
	○ 관리비(상암)			1,406	1,427	1,448	4,281
	○ 사업비	270,830	296,288	324,139	354,608	387,941	1,633,806
	소계(b)	275,030	300,551	329,872	360,427	393,847	1,659,727
□ 총 비용(a-b)		51,706	36,539	91,794	70,110	45,845	296,02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 활용에 따른 수익금(사용료 및 임대료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정행정국 문화관광과 김유미
연락처	02-3153-8363

II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입관련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 사용료(합정3구역, 상암DMC)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5조)에 의거한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하며,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야 하나 비용추계자료는 주변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합정3구역 ⇒ 약1.7% 상승, 상암DMC ⇒ 약4% 상승)
- 사용료 산정산식 : 재산평가금액(토지공시지가 + 건물시가표준액) × 50/1,000
- 상암DMC 특별계획지구 시설 사용료는 현재 재산평가금액 산정이 제한되는바, 인근 누리꿈스퀘어 상가 월 평균임대료의 약 50%수준으로 추정하여 계산함

1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항목	산출 산식	금액
합정3구역 문화및집회시설 사용료(2015년)	㎡당 월임대료(22,663원) × 면적(1,201.40㎡) × 12개월	326,736 천원
상암DMC 공공기여시설 사용료(2017년)	㎡당 월임대료(24,093원) × 면적(273㎡) × 12개월	78,928천원

※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 사용료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적용하여 추정함

-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 = 2,000원 수익(1만원 상품) × 월 평균 200개 판매

- 세출관련

- 1차년도 관리비는 인근 메세나폴리스 상가 관리비(㎡당 평균 월 5,000원)를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 이후는 최근 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약1.5%)를 반영하여 추계함
- 1차년도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최근 2년 관광안내체계구축 및 관광홍보마케팅 예산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2차년도 이후는 문화관광과 최근 2년 관광 관련 예산 상승률 평균치(9.4%)를 반영하여 추계함